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8. 1.)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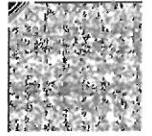
< 주요 개정내용 >

-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안 제10조의3 신설)
- 나. 의료기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안 제13조의2)
-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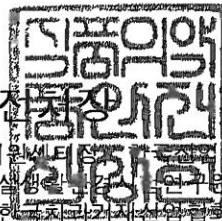
2.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8월 1일(화)자 관보 및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의료기기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대한의공학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치과재료학회이사장,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티유브이슈트코리아(주) 대표이사, 한국에스지에스(주) 대표이사,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장,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장,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장,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장,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시험원장,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의료기기시험원장, (주)디티엔씨 대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사무관 이훈 서기관 대결 2017. 7. 28. 과장 전결
오영진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6483 (2017. 8. 1.)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 / www.mfds.go.kr
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번호 043-719-3762 팩스번호 043-719-3750 / hoon002@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